

(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제45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1년 10월 28일(금) 오후1시

장 소 : 본부 16층 회의실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총 무	이사장
			 代		 



(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제45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사회 : 고수● 이사장

1. 개회 예배

설교 : 고수● 은급재단 이사장

2. 회원 점명

서기가 회원 점명을 하고 16명이 참석함을 보고하다. 이어서 감사 3명 (장병● 목사. 성근● 목사. 안준● 장로)과, 본부 감사위원회 위원장 최재● 목사와 서기 유재● 장로를 소개하다.

3. 개회 선언

4. 전 회의록 낭독

5. 업무 보고

사무국 총무직무대리 이희● 권사의 인사에 이어 은급부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집8p~10P) 주승● 은급부장대리가 보고하기로 하다. 은급부장대리가 업무 보고를 하니 성근● 감사가 현재 은급금 운용과 예금 잔액 현황이 감사위원회에 보고 한 것과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하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 되었으니 감사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업무 보고도 받기로 하다.

6. 부의안 처리

1) 감사선출

본부 감사위원회에서 은급재단 감사로 배정한 3인을 다음과 같이 감사로 선출 하자는 유강● 이사의 동의에 장동●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일치 가결하다.

감사 : 장병● 목사(충청연회)

성근● 목사(충북연회)

안준● 장로(동부연회)

2) 감사위원회 소견 발표

최재● 감사위원장이 은급부 감사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한 후, 감사위원회의 서기인 유재● 장로가 그 동안 진행과 문제점에 대해 소견을 말하니, 사회자가 감사위원회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요청하자, 박수로 화답하다.

3) 감사위원회 소견에 대한 토의

출석한 이사들의 개인적인 소견이 있은 후, 이은● 이사가 감사 4명, 은급재단 이사 4명, 현직 감독 3명(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 제외)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동의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을 하니, 가결이 되다.

대책위원회 명단 : 감독- 가홍●, 김종●, 전용●

은급이사- 유강● 목사, 표창● 목사, 이은● 장로,
인기● 장로

감사- 최재● 목사, 장병● 목사, 고양● 장로,
유재● 장로

(고수● 이사장이 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다. 동의집이 가결되다. 만장일치로)

법제화를 위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특별위원회를 두자는 유용● 이사의 동의와 이은● 이사의 재청으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결의하다.

유용● 이사가 이사회에서 은급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대책위원회에 모든 사안을 위임하기로 동의하고 다수의 재청으로 위임키로 결의하다.

송윤● 이사가 임시이사회를 12월 초에 개최하자는 동의에 최금● 이사 재청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다.

4) 목회관리위원 보고

7. 기타

8. 폐회

이사장 고수 ●

이사

이은 ●

이사

인기 ●

이사

최금 ●

이사

김길 ●

이사

유용 ●

이사

장준 ●(불참)

이사

이일 ●

이사

김용 ●

이사

김경 ●

이사

이충 ●(불참)

감사

장병 ●

이사 전용 ●(불참)

이사

김정 ●(불참)

이사

표창 ●

이사

유강 ●

이사

송윤 ●

이사

문재 ●

이사

박현 ●

이사

이원 ●(불참)

이사

차정 ●

이사

장동 ●

감사

성근 ●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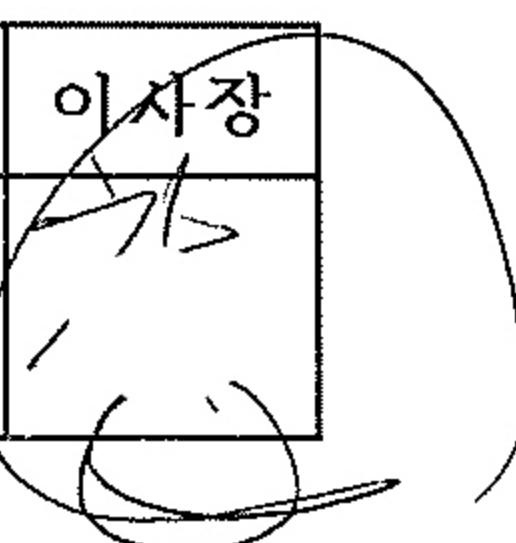
안준 ●

(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제34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오후 1시

장 소 : 본부 16층 회의실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총무	이사장



제34회 은급재단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시: 2011년 12월 15일 / 13시 30분

장소: 본부회의실

1. 개회 예배

고수● 이사장의 사회로 개회 예배를 드리다.

2. 회원점명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니 재적이사 21명 중 출석 17명과 결석 4명, 감사 3명 중 출석 3명임을 보고하다.

출석 이사: 고수● 이은● 인기● 표창● 최금● 유강● 김길● 송윤●
유용● 장준● 박현● 이일● 이원● 김용● 차정●
장동● 이충●

결석 이사: 전용● 김정● 문재● 김경●

출석 감사: 성근● 장병● 안준●

3. 개회 선언

4. 회의

1) 표창● 이사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동의하니, 유강● 이사가 재청을 하고,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을 하다. 사회자가 회의 진행을 녹음할 것을 요청하니 모두가 찬성을 하다.

2) 유강● 이사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사회자인 고수●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아니므로 사회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임시 의장을 세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다. 이에 고수● 이사장은 “법적으로 본인이 이사장이므로 사회권이 있다” “이사들께서 사회를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 않겠다”고 발언을 한 후, 이사들에게 “사회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해 의사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하여 결의하다.(고수● 이사장 퇴장하다)

3)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 인기 ● 서기가 사회를 보다. 선출 방법을 묻자 구두호천 하자는 김길 ● 이사의 동의와 유용 ● 이사의 재청을 모두가 찬성을 하여 가결된다. 표창 ● 이사가 임시의장으로 유강 ● 이사를 추천하니 모두가 찬성을 하니 가결된다.

4) 유강 ● 이사가 임시 의장이 되어 사회를 보다. 회순에 따라 전 회의록 낭독은 유인물 대로 받고, 부의안 가운데 1) 은급재단문제대책이원회의 권한과 책임, 3) 김영 ● 목사의 보고는 안건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표창 ● 이사의 동의에 김길 ● 이사가 재청을 하자 모두가 찬성을 하다.

5) 부의안 4)외부 회계법인 계약금(40,000,000 원)은 은급재단에서 지급할 것을 송윤 ● 이사의 동의와 유용 ● 이사의 재청을 모두가 찬성을 하다. 이어서 대책위원회에 대한 권한으로 제45회 정기이사회 결의 사항(은급재단문제에 대해 모든 권한을 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을 포함한 모든 경비(위원 활동비 포함)를 은급재단 예산(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것과 은급부 업무의 지출 결재는 통상적인 것은 예전대로 먼저 지출을 하고 추후 결재할 것을 유용 ● 이사의 동의에 송윤 ● 이사가 재청을 하니 모두가 찬성을 하다.

6)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 보고

은급문제대책위원회(이하 은대위) 상임 위원인 전용 ● 감독이 그 동안 은대위의 활동과 결의 사항 3개를 전달하다.

- (1) 은급기금 손실보고 : 삼덕회계 법인 보고 2011년 9월 30일 -37억 원과, 펀드 전문인 보고 2011년 11월 30일 -42억 원
- (2)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관련자 전원은 형사고발과 구상권을 청구한다.
- (3) 고수 ● 이사장의 해임을 은급재단이사회에 권고한다.

7) 회계법인 회계감사 보고

삼덕 회계법인 담당자가 자료집을 중심으로 2011년 9월 30일 현재 은급기금 투자로 인한 손실액이 -3,761,300,000 원이라고 보고하다.

8) 펀드 전문인 보고

펀드 전문인 손홍 ● 권사가 자료집을 중심으로 2011년 11월 30일 현재 은급기금 투자로 인한 손실액이 - 42억 원이고 보고하다.

9)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이하 은대위)와 삼덕회계법인, 펀드 전문인의 보고가 끝나자, 송윤 ● 이사가 은급기금 손실 관련자들은 은대위에 처리를 위임할 것을 동의하자, 유용 ● 이사가 재청을 하니 모두가 찬성을 하다. 투자된 펀드의 처리는 펀드

전문가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모두가 찬성을 하여 가결되다.

10) 소위원회 조직

5. 기타

(1) 본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과 자료집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송윤● 이사의 동의와 유용● 이사의 재청을 모두가 찬성하여 결의하다.

6. 폐회

2011년 12월 15일

이사장 고수●

이사 전용●(불참)

이사 이은●

이사 김정●(불참)

이사 인기●

이사 표창●

이사 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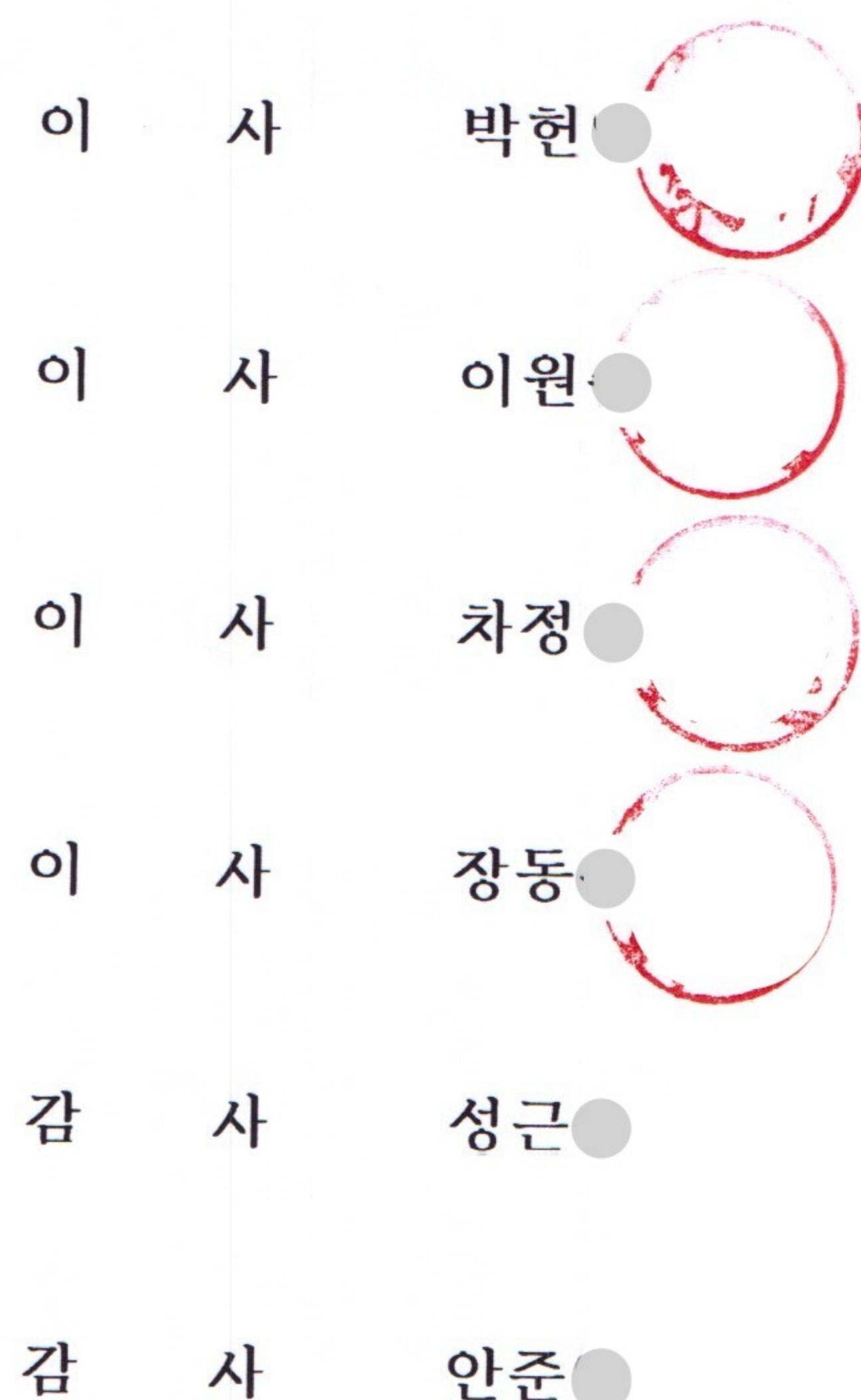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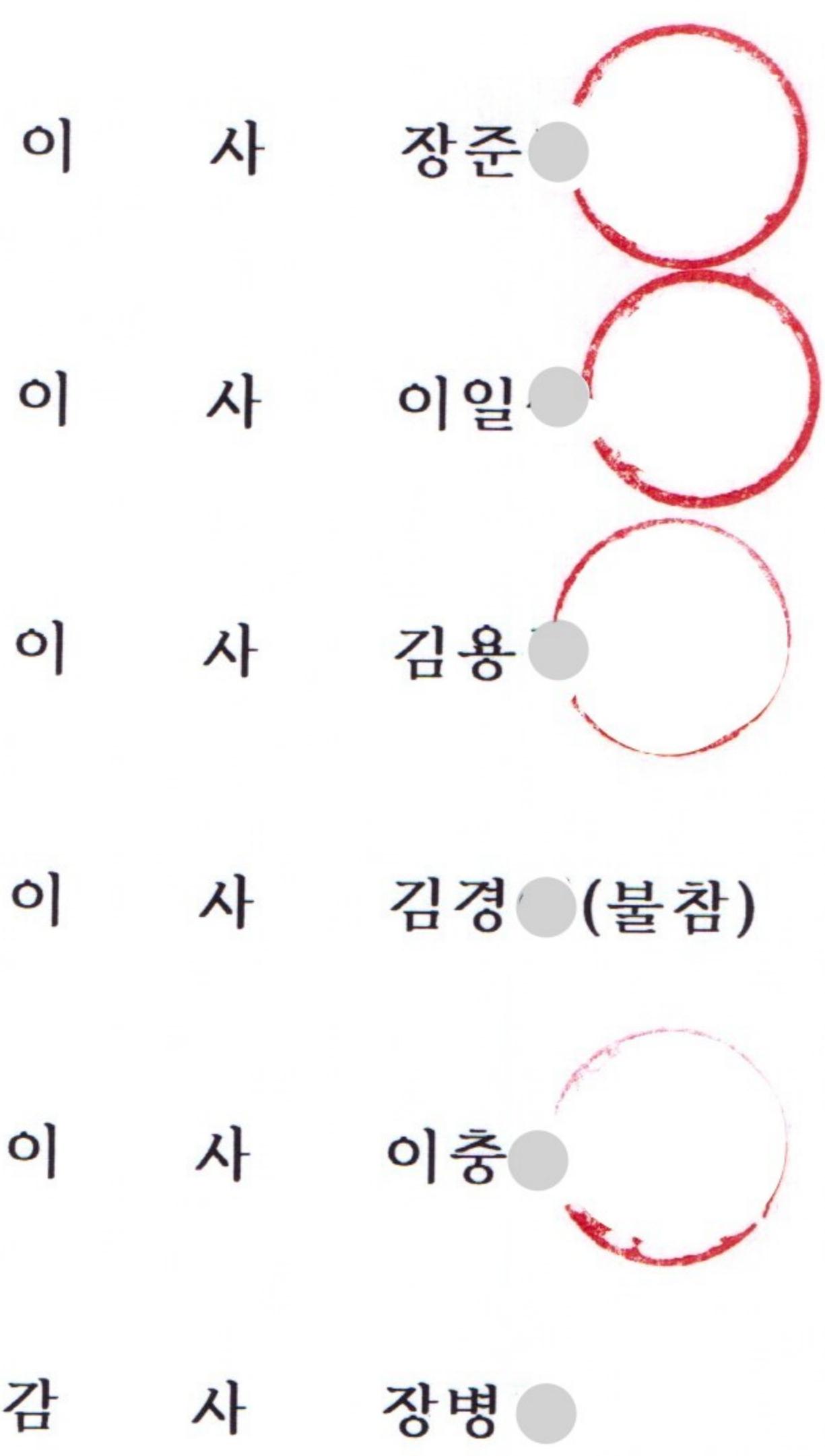
이사 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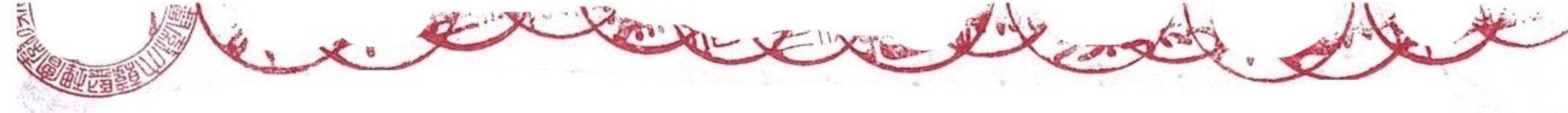
이사 김길●

이사 송윤●

이사 유용●

이사 문재●(불참)





(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제 40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 시: 2013년 4월 15일(월) 오후 12시

장 소: 세종문화회관 지하 설가온

사 회: 김기● 이사장

1. 개회기도회

2. 회원점명

서기(이태● 이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이사 21명 중 15명 출석, 감사 3명 중 1명이 출석하다.

출석 이사 : 김기● 이은● 강충● 양수● 김복● 이태● 유강● 유준●
송윤● 조광● 정준● 조명● 김광● 김준● 장성● (15명)

결석 이사 : 송기● 최선● 김광● 방인● 지영● 전광● 강귀● (7명)

출석 감사 : 김광● (1명)

결석 감사 : 박인● 이군● (2명)

3. 개회선언

4. 전회의록 낭독

5. 은급부장보고

은급부장이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은급기금을 가지고 부동산투자가 가능한지를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에 질의한 회신의 결과를 발표하다(장정 620단 제29조 3항
기타수익사업으로 은급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부동산을 매입
할 수 없다).

기탁금정산내역

이은 ● 이사 문제제기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우리가 요구한 답변이 아닌 것 같다. 장정 620단 제29조 1, 2항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은급기금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가였는데 3항의 기타사항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해석의뢰는 법리해석만 해 주면 될 것인데 은급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1, 2항은 사업의 본질이다. 재결의 요청을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

유강 ● 이사

일단 장정 상에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본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폭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투자는 불가하다고 해석한 것을 다시 올려봐야 똑같다. 그래도 올려야 한다면 김기 ● 이사장을 통해 감독회장이 재결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조광 ● 이사

입법의회 때 장정개정을 통해 은급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송윤 ● 이사 동의안

은급재단 소위원회 중에 운영위원회와 재산개발위원회가 모여서 의논한 다음 의견을 모아 임시감독회장님께 올려서 재결의를 요청하기로 송윤 ● 이사가 동의하고 양수 ● 이사가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은급재단 문제 대책위원회 보고(전용 ● 목사)

은급기금 사태를 일으킨 관련자들에 대해서 11명의 이름으로 형사고발을 했었다.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원인을 보면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교리와 장정 636단 제7조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의미는 일반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비롯해 펀드투자도 예치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주문 내용을 설명했다.

즉 관련자들이 은급 기금으로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 됐지만 그것은 장정에서 의미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과 다름이 없어 장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소견이었다.

전용 ● 목사는 김덕 ● 목사가 사무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받지도 못

한 채 개인 자격으로 은급기금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등 검찰까지 가서 패소하고 결국 대검찰청에 항고까지 가 있는 상태라며 검찰청에서 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동일한 사항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항소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의 판단이지만 만약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은급기금의 손실을 입힌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어서 어떻게 이를 다룰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용● 목사는 은급재단이사회에서 4천만원 소송비용 중 2천만원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항소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다루되 민사소송을 제기하던가 아니면 김덕● 목사 측 변호사를 도와서 승소하는 방향을 논의 하든가 이와 함께 교회법으로도 이들의 문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7. 간서명 이사 선출

8. 기타사항

9. 폐회

